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인도범죄는?

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체계적이고,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,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)를 설립하였습니다. 조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금껏 발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2014년에 발간했습니다.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가 발생했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조사위원회는 “해당 침해 행위의 중대성, 규모, 그리고 성질을 보건대, 현대 사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”¹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.

조사위원회가 명시한 반인도범죄로는 절멸, 살해, 노예화, 고문, 구금, 강간, 강제 낙태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, 정치·종교·인종·성별에 근거한 박해, 주민의 강제 이주,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짚주림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.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를 정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이 명시한 범죄의 정의를 사용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, 이 규정은 가장 최근에 널리 합의된 범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.

로마규정에 따라 반인도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해당 행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, 해당 공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행되어야 합니다.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해당국 내 반인도범죄가 발생했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.² 구체적으로는 정치범 수용소(관리소) 및 기타 구금시설 수감자, 해당국 이탈을 시도하는 자,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는 문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기독교 신자와 기타 사람들이 반인도범죄의 대상이 됩니다.³ 이에 더해 보편적 인권인 식량권을 위반하는 결정 및 정책으로 야기된 반인도범죄가 짚주리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되었습니다.⁴

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3월 인권이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보고서는 “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모든 잠재적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. 여기에는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(관리소)와 국가보위성 및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일반 수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례도 포함한다. 일반 수감시설은 로동단련대, 구류장, 집결소 및 교화소를 포함한다”⁵고 언급했습니다.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과 진행한 면담에

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상세 보고서, 2014년 2월 7일, A/HRC/24/CRP.1, 문단 1211.

² 상동, 문단 1160.

³ 상동, 문단 1161.

⁴ 상동, 문단 1162.

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, 2021년 1월 11일, A/HRC/46/52, 문단 42.

따르면 일반 수감시설 내 고문, 구금, 노예화의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.